# 2024학년도 신입생 안내서



전 주 영 생 고 등 학 교

# 목 차

- 1. 학교장 인사말 [3p]
- 2. 등교 전 사전 준비사항 [4~5p]
- ① 복장 관련
- ② 학생증 관련
- ③ 야간 자율학습 및 석식 관련
- ④ 기타 준비
- 3. 등교안내 [6p]
- ① 등하교 관련
- ② 반편성 및 시간표
- ③ 기초학습 진단평가 및 관련 지원 안내
- ④ 시정표
- 4. 신입생 등교당일 일정 [7p]
- 5. 부록 [8~23p]
  - ① 3개년 교육과정 편성표
  - ② 교과서 목록
  - ③ 전주영생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 1. 학교장 인사말

'학생이 즐겁고, 교직원이 행복한 학교' 전주영생고등학교

### 2024학년도 전주영생고등학교 신입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전주영생고등학교에 배정된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학교 시절을 잘 이겨내고 우리 학교에 들어오게 된 것을 마음 깊이 축하드립니다.

1953년도에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개교한 전주영생고등학교는 2024년 1월 말에 67회 졸업생을 배출하게 됩니다.(총 25,762명) 따라서 이번에 배정된 신입생들이 3년 후에 졸업할 때는 70회 졸업생이 됩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이 즐겁고, 교직원이 행복한 학교"라는 기치 아래

첫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교육

둘째,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교육

셋째,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학교

라는 세부 목표를 가지고 학교가 운영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학생들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첫째, 자신의 진로를 찾아 끊임없이 고민하는 학생.

둘째, 늘 새로운 것을 찾아 도전을 멈추지 않는 학생.

셋째, 스스로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아는 학생.

넷째, 공동체의 질서와 가치를 존중하는 학생.

전주영생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학교의 좋은 점을 물어보면 '학교 급식이 맛있다', '시설이 좋다', '선생님이 친절하다'는 세 가지를 말하곤 합니다. 급식과 학교 시설은 학교가 신경을 쓰면 나아질 수 있겠지만,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친절하게 가르치고 안내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전주영생고등학교에 근무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위한 배려를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주영생고등학교에 와서 자신의 진로를 찾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옆에서 도와주고, 힘을 주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3년 간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꿈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멋진 영생인이 될 것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전주영생고등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주영생고등학교장 이장훈 드림

# 2. 사전 준비물

### ① 복장 관련

- O 교복
- 등하교 및 교내 활동 교복착용 필수
- O 실내화
- 본교는 실내 착용 신발 규칙이 따로 없습니다. 운동화 착용도 가능합니다.

#### ② 학생증 관련

- O 우리학교는 신한은행과 연계된 학생증을 발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O 주민등록초본
- 학생 주민등록 번호가 **뒷자리까지 모두 나온 것**(주소변경이력 필요 없음)
- O 여권용 증명사진 파일 제출준비
- 학생종합생활기록부(NEIS) 입력 및 학생증 발급용 사진입니다.
- 반드시 귀가 보이고 배경이 없는 '여권용 사진'으로 준비
- 반드시 전주영생고 교복을 입고 촬영한 사진
  - ※ 교복은 교복업체에서 2월 26일~28일 수령 예정 / 체육복 3월 중 학교에서 배부 예정
- 입학당일(3월 4일) 담임 교사에게 <u>컴퓨터 파일형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u> ※ 인화형태의 사진은 제출안함. 컴퓨터 파일만 제출함

#### ③ 야간 자율학습 및 석식 관련

- 야간 자율학습(18:10~21:30)은 **3월 11일(월)부터** 실시합니다.
- **입학 당일에 조사할 예정**이니 야간 자율학습 희망 요일을 정해오기 바랍니다.
- 야간 자율학습은 주 3회 이상을 추천합니다.
- 석식은 **3월 11일(월)부터** 실시합니다.
- **입학 당일 석식 신청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석식 신청 여부를 정해오기 바랍니다.
- 석식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 ④ 기타 준비

- O 입학일 당일 교과서 배부함. 교과서를 담을 가방 준비
- 수익자 부담경비 출금 동의서(스쿨뱅킹) 제출
- 신입생 등록 시 배부했으나, 분실했을 경우 다음 장의 양식을 활용가능

# 학생이 즐겁고 교직원이 행복한 학교



전주영생고등학교

# 가정통신문

발행번호

행정 제2024-5호

전라북도 전주시 천잠로 333 행정실 ☞ 063) 220-3511 FAX 063) 225-3515

#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 출금동의 안내

학교	교육활동여	에서 발	생하는 1	다양한	경비 중	보호자	가 부담해여	갸 하는	- 수익자투	나담경비	](급식비,	방과	후 학
亚立	2육활동비	등)를	처리하	기 위해	전자금	융거래법	] 제15조에	따라	납부방법	신청 '	및 출금동	등의를	요청
하오	니 3월 4일	등교시	] 담임선	过생님께	제출하	주시기	바랍니다.	(절취불	필요)				

	-)들 처리하기 위하 <mark>등교시 담임선생님</mark> 께				₫ 신정 및 <sup>←</sup>	줄금농의들 오	<b>1</b> 정	
	내기록은 전자금융 <i>7</i> 내역은(학생 주민등록				를 위해 국세	청에 제출합니	다.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서								
학년 박	학년 반 번 성명: (학생주민등록번호:							
납부 🗆 -	은행 자동이체	대상 은행		농협	□전북은	행		
방법 🗆 .	신용카드 자동납부	대상 신용카드사	□BC □NI	H농협	□KB국민	□신한카드		
위와 같이 학교	교활동에서의 수익지	<b>나부담경비 납부방</b>	법을 신청함. <b>보</b>	.호자 성 <b>'</b>	명	(서명	)	
	<mark>자동납부 신청대상자</mark> ' ·부모님께서 카드사로				신용카드 자동	납부 신청 안내	문	
	은행 자동	이체 출금동의	리서(지원금 기	지급 계	좌)			
예금주			은행명	□농협	ㅁ전	선북은행		
예금주 생년			계좌번호					
예금주 전화	번호   교활동에서의 수익지	나브다겨비 자도이	체 추그에 도이	하 메그즈	5 서명	(서명	Ħ/	
	도납부를 선택 경우				<del></del>		<b>5</b> )	
<ol> <li>수집이</li> <li>수집항</li> <li>이용 달</li> </ol>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동 법률에 따라 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 수익자부담경비 수납에 사용 2. 수집항목 : 학생(학년, 반,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보호자 및 예금주(보호자명,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전화번호) 3. 이용 및 보유기간 : 신청 학생의 학교 재학기간 및 졸업·전학 등 후 6개월간 전자금융거래기록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라 5년간 보관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자동납부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	성보 수집·이용 동의				]아니요			
<ul> <li>○ 수집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동 법률에 따라 제3자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li> <li>1. 제공기관: 해당 금융기관 (금융결제원·은행 또는 신용카드사)</li> <li>2.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은행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국세청 학생교육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li> <li>3. 제공항목: 은행 자동이체(예금주명, 예금주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신용카드 자동납부(학교명, 학생명, 학생생년월일, 학생식별번호)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학생명, 교육비 납입내역, 학생주민등록번호)</li> <li>4. 이용 및 보유기간: 신청 학생의 학교 재학기간 및 졸업·전학 등 후 6개월간</li> <li>5.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자동납부 할 수 없으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없습니다.</li> </ul>								
개인정	성보 제3자 제공 동의	4	_ a	1	□아니요			
		2024.						
	보호ス	├(법정대리인) :		(서대	명)			
	저 주 여 새 그 드 하 그 자 그런							

也十岁岁上方年上分 귀하

# 3. 등교 안내

#### ① 등하교 관련

- 등교시간(08:30) 내에 교실 입실, 하교시간(16:40)
- 출결 관련 미인정 지각, 조퇴, 결석이 누적되면 학생 생활 규정에 의한 지도실시
- 부록의 학생 생활 규정 참조(p 21~23)
- O 등하교 및 학교 내 모든 활동 교복 착용 필수
- 등하교간 슬리퍼 착용 금지
-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 이미지 및 명예 제고 관련 슬리퍼 착용 엄중 금지

### ② 반편성 및 시간표

- 반편성은 2월 21일(수) '홈페이지-입학 안내- 신입생 공지 자료실'에 공지 예정
- 시간표는 2월 말 홈페이지 게시한 후 문자메세지로 알림 예정

#### ③ 기초학습 진단 및 관련 지원 안내

- 3월 14일(목),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 기초학습 성취도 측정을 위한 국,영,수 평가(중학교 3학년 수준)
- 기초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학습 지원(학습 상담 및 보충학습)

### ④ 시정표

교시	시 간
1교시	08:40 ~ 09:30
2교시	09:40 ~ 10:30
3교시	10:40 ~ 11:30
4교시	11:40 ~ 12:30
점심식사	12:30 ~ 13:30
5교시	13:30 ~ 14:20
6교시	14:30 ~ 15:20
7교시	15:30 ~ 16:20
청소 및 종례	16:20 ~ 16:40
8교시 자율	16:40 ~ 17:30
저녁식사	17:30 ~ 18:10
야간자율 1교시	18:10 ~ 19:50
야간자율 2교시	20:10 ~ 21:30

# 4. 신입생 등교 당일 일정

# □ 2024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계획

O 일시: 2024년 3월 4일(월) 08:30~16:30

O 장소: 세미나실 및 각 반 교실

○ 세부일정 및 시간표

일	시간표	시간	활동내용	장소
	08:30~08:40	10분	등교/출석 확인	학급
	08:40~09:30	50분	담임과의 대화 - 시간표, 학교규칙 안내, 석식조사, 서류 제출 및 취합	"
	09:40~10:00	20분	세미나실로 이동, 자리 정리	세미나실
	10:00~10:30	30분	성경봉독 및 기도 & 학교장 환영사 (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목, 담임 소개)	"
	10:40~11:10	30분	학생생활 안내 - 인성부장	"
적응기간	11:10~11:30	20분	학교 교육과정 안내 - 교육과정부장	n
3월4일(월)	11:40~12:00	20분	학교 진로프로그램 안내 - 진로부장	n
	12:00~12:20	20분	학년 특색 프로그램 안내 - 학년부장	n
	12:20~13:30	점심	점심식사	급식실
	13:30~14:20	5교시	교과서 배부	학급
	14:30~15:20 6교시		리로스쿨 안내 가입 및 학생 기초조사	"
	15:30~16:20	7교시	학생증 및 통장 신청서 작성, 청소구역 배정	"
	16:20~16:40	종례	종례 및 하교	"

#### 0 기타

- 중식(입학식 1일): 1학년(12:20) - 3학년(12:35) - 2학년(12:50) 순으로 입장(15분 간격)

※ 3/5(화)부터 3학년(12:30) - 2학년(12:45) - 1학년(13:00) 순으로 입장

# 5. 부록

#### ① 3개년 교육과정 편성표

O 링크첨부: https://school.jbedu.kr/jjys/MABBCAE/view/5724903?

#### ② 교과서 목록

과목	출판사		
과학탐구실험	㈜비상교육		
국어	㈜창비		
수학	㈜비상교육		
영어	㈜와이비엠홀딩스(한상호)		
통합과학	㈜천재교육		
통합사회	㈜미래엔		
한국사	㈜미래엔		
미술창작	미진사		
음악	㈜천재교과서		
정보	㈜삼양미디어		
종교와 생활॥ (상)	생명의 말씀사		
종교와 생활॥ (중)	생명의 말씀사		
체육	㈜지학사		
한문ㅣ	㈜미래엔		

#### ③ 전주영생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O 원문링크: <a href="https://school.jbedu.kr/jjys/MABADAI/view/5804612?">https://school.jbedu.kr/jjys/MABADAI/view/5804612?</a>

# 전주영생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정 2009. 03. 01. 제6차 개정 2018. 04. 16. 제7차 개정 2021. 10. 06. 전부개정 2023. 12. 28.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전주영생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전주영생고등학교학교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제3조(교육 3주체의 책임과 역할)

-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학교 공동체의 인권문화를 존중하고 실천하며, 학교 및 교원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이하 "교육활동"이라한다)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학생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 제2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4조(학생의 권리) 모든 학생은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1. 학습에 관한 권리
- 2.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 3.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 4.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5.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6. 안전에 대한 권리
- 7. 휴식을 취할 권리
- 8. 개성을 실현할 권리
- 9. 사생활의 자유
- 10.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 11. 정보에 관한 권리
- 12. 양심・종교의 자유
- 13. 표현의 자유
- 14. 자치활동의 권리
- 15.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
- 16.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17. 복지에 관한 권리
- 18.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 19. 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 20. 급식에 대한 권리
- 21. 건강에 관한 권리
- 22.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23.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
- 24. 그 밖의 보편타당한 권리

제5조(학생의 책임)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 1.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
- 2. 수업 등 교육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책임
- 3.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
- 4.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육적 권한을 존중할 책임
- 5. 학교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책임
- 6. 학생간 서로 존중하며 학교폭력을 일으키지 않을 책임
- 7. 바른말과 글을 쓰고 정보통신 윤리를 준수할 책임
- 8. 수업 등 교육활동 중에 전자기기 사용 규칙을 지킬 책임
- 9. 학교 환경을 소중히 하고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책임
- 10. 자신과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책임
- 11. 그 밖의 보편타당한 학생의 책임

### 제3장 학생의 기본생활

#### 제6조(기본행동)

- ① 학생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② 학생은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③ 학생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④ 학생은 다른 사람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글, 상징, 혐오 표현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를 표현하는 복장이나 장식물 등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⑤ 학생은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
- ⑥ 학생은 교원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인권우호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학생은 두발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를 제한받지 않는다.(단, 염색과 탈색의 경우 공동체 생활에 저해될 경우 제한 할 수 있다.)
- ⑧ 학생은 교복 착용 시기, 방한용 덧옷의 착용 여부 형태 등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 ⑨ 학생은 등·하교시 교복을 필수로 착용하며, 등교 후 교내에서는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착용할수 있다.
- ⑩ 학생은 ⑨항의 복장을 갖춰 입고 날씨에 따라 그 위에 외투(점퍼, 코트)를 착용할 수 있다.
- ① 학생은 교복의 구입 당시 형태를 변형해서는 안 된다. 단, 체격의 변화로 크기를 조정하는 것 은 허용된다.

#### 제7조(수업 태도)

- ① 학생은 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지킨다.
- ② 학생은 교원의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가지고 참여한다.
- ④ 학생은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수면이나 휴식이 꼭 필요할 때는 교원에게 허락을 받는다.
- ⑤ 학생은 교원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⑥ 학생은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⑦ 학생은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허락 없이 해당 교육활동의 내용에 대한 실시가 송출. 녹

화, 녹음 등을 하지 않는다.

#### 제8조(휴식시간과 여가활동)

- ①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들의 휴식시간(식사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장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비례의 원칙1)에 따라 최소의 범위내 에서 교육활동, 생활지도 등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은 휴식시간에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할 수 있다.
- ③ 학생은 휴식시간에 전산실, 음악실, 체육실, 도서실 등의 특별실은 교원의 허락을 받아 이용할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지킨다.
- ④ 학생은 교원의 허락 없이 학교 밖에 나가지 않는다.
- (5) 학생은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활동을 하지 않는다.

#### 제9조(시설 이용과 환경)

- ① 학생은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학습도구를 소중히 사용한다.
- ② 학생은 방과후나 휴일에 학교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학교의 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 ③ 학생은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를 절약한다.
- ④ 학생은 쾌적한 수업과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 제10조(개인 소유물)

- 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②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하거나 훔쳤을 때는 학생과 그 보호자가 책임진다.
- 제11조(소지·사용 금지 물품) 학생은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을 가지고 있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2.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3.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한 각호의 소지 · 사용을 금지한 물품
    - 가. 소지 금지 물품
      - 1) 성냥. 라이터. 폭죽. 미용 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이나 전열기
      -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
      -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4) 모든 형태의 도박 물품
      - 5) 인권침해, 혐오표현, 폭력행위를 표현하는 물품
      - 6)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각종 자료나 물품
      -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 8) 그 밖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등
    - 나. 교육활동 중 사용 금지 물품
      - 1)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이하 "전자기기"라 한다)
      - 2) 과도한 소음 등을 발생시켜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도구 및 장치 등

#### 제12조(소지 물품 조사)

① 제11조에 따른 가지고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학생이 소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교원은 불특정 다수의 학생(전 학년·특정 학년·특정 집단 등) 대상으로 정기적·일괄적으로

<sup>1)</sup>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을 지키는 것

검사해서는 안 된다.

- ② 교원이 소지 물품을 조사할 때는 학생에게 소지 물품 조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④ 교원은 소지 물품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만한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한다. (예: 공개된 장소에서의 검사, 학생 가방을 뒤집어 흔들어 쏟아내는 행위 등)

#### 제13조(학생 개인물품 관리)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청소년이 소지하기에 부적절한 물품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 ② 교원은 사안이 처리된 후에는 보호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 ③ 학생이 수업 등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물품을 사용한 경우는 해당 수업 또는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교원이 보관할 수 있다.
- ④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보관 방법 및 기한은 [별표 1]과 같다.

#### 제14조(전자기기 사용)

- ① 학생은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목적 및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교원이 허가한 경우는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이 전자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자기기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 ③ 담임교사는 교육활동 중 휴대폰(전자기기 등) 자율 제출에 학생, 학부모가 동의(가정통신문 등)한 경우 수거·관리(등교시 제출, 종례시 소지)할 수 있다.

#### 제15조(정보통신 윤리)

- ① 학생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정보와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 ② 학생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학생은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유해매체를 공유하거나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
- ④ 학생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⑤ 학생은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제16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5조에 따른 학업 및 진로·제6조에 따른 보건 및 안전·제7조에 따른 인성 및 대인관계·제8조에 따른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 2023-28 호)

제5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 · 사용
-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6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7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8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 3. 비행 및 범죄 예방
-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 제17조(생활지도의 방식)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9조에 따른 조언·제10조에 따른 상담·제11조에 따른 주의·제 12조에 따른 훈육·제13조에 따른 훈계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의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② 고시 제12조 제6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와 정 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조치에 관한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 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행동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경우 제21 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18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및 이 규정 제21조에 따른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학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19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교감)을 포함한 인성부장, 교무부장, 각 학년부장(해당 학년), 상담교사, 보건교사, 업무담당교사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인성부장은 부위원장으로 위원장의 임무를 보좌하고 사무를 주관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초부터 말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20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 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된다.
-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⑥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1조(학생 징계)

- 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 내 봉사: 7일 (1일 최대 4시간)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2. 사회봉사: 7일 (1일 최대 4시간)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3. 특별교육이수: 5일 이상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4.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한다.
  - 5. 퇴학처분: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행할 수 있다.
    - 가.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학생
    - 다. 기타 학칙을 위반한 학생
  - 6.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교육,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않고 학생 교육의 한 방법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 1. 징계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2.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 3. 징계 행위를 한 학생과 피해를 입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 4. 징계 학생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노약자 등 여부 및 그 정도
  - 5.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 ③ 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2.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3.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해야 한다.
  - 4. 제21조에 따른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은 그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치를 받는 날로부터 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일 이

내에 학교의 장에게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 1. 학교의 장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2. 학생 또는 보호자가 조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학교의 장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3. 학교장이 조치 이행 중 학생의 반성 정도 및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등을 고려하여 교육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⑤ 제21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2조(징계의 방법)

- ① 학교 내 봉사: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수업 전후, 점심시간 등) 실시한다.
- ② 사회봉사: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 해당 학생은 전라북도 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 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④ 출석정지: 해당 학생은 가정학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모님의 보호 감독이 어려울 경우 학교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⑤ 퇴학처분: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처분을 시킬 수 있으며, 퇴학처분을 할 때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 1.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2.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는 당해 학생,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해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사회교육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해야 한 다.
  - 3. 학교의 장은 학업중단 의사가 있는 학생에게 반드시 학업중단숙려제를 안내해야 한다.
- ⑥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이수는 보호자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 안전하게 수행하 도록 하며, 학교나 해당 기관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학교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 제23조(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교 내 봉사
  - 1. 학교환경 정리활동
  - 2. 교내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 3. 인성 · 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 ② 사회봉사
  -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 ③ 특별교육이수
  -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

육 이수

-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 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 4.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 ④ 출석정지

- 1. 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2. 출석정지로 보호자 요청에 따른 가정학습 기간 동안 학부모와 동반한 사회봉사 20시간 이 상 이수한 증명서(실사 확인)와 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하면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 제24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 ①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 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 ② 위원회는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③ 위원회는 학생과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통화 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 제25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③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징계 결과가 통보된 후 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6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음)의 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 제27조(사후 조치)

- 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 ② 퇴학 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와 동령 제89조(고

등학교의 전학 등)에 의거하여 전학 또는 재입학이나 편입학 할 수 있다.

제28조(징계의 기준) 학교생활규정 재·개정 방향이 제시한 관련 근거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각 학교에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19조 2항의 절차를 거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2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 척된다.
  - 1. 해당 사안과 관련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2.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된 사람인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5장 학생생활규정 개정

#### 제30조(학생생활규정의 개정)

- 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학생생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주영생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 2. 관련 법령(법률·대통령령·부령, 자치법규,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및 지침에 따라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 3. 그 밖에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표는 교장에게 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1. 교직원협의회의 의결
  - 2. 학부모회의 의결
  - 3. 학생자치회의 의결
  - 4. 제24조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의결
- ③ 교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정의 개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3조에 따른 학생생활 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④ 교장은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학생자치회의 회의
  - 2. 학부모회, 학부모회 분과 모임 등의 회의
  - 3. 교직원협의회, 교사협의회 등의 회의
  - 4. 그 밖에 학교누리집,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

#### 제31조(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 ① 학생생활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학생생활규정의 제정 · 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 2. 학생생활규정안의 검토,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의 절차와 방법
  - 3. 학생생활규정안의 제정·개정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 4. 학생생활규정안의 확정
  - 5.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학생생활규정 연수・홍보
  - 6. 학생생활규정과 관련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등에 대한 심의
  - 7. 학생 구성원의 학생생활규정 준수 및 실천 정도 평가
  - 8. 그 밖에 학생생활규정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대표로 구성하며,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대표 위원이 전체의 40%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초부터 말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된다.
- 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①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

## 제 6 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 제35조(학업중단예방에 관한 계획 수립)

-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및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36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 ①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학년 초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 2. 학업중단예방위원회는 교감, 인성부장, 전문상담교사, 담임교사로 구성한다.
- ③ 학업중단예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한다.

- 1. 숙려기간 및 숙려 횟수(주 단위로 설정)
- 2. 숙려제 운영은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최초 결정에 따르도록 하며, 숙려기간 중 숙려기관, 프로그램 변경 등은 숙려기간 종료 전 학생, 학부모와의 협의를 거쳐 변경 가능함(단, 출석을 인정하는 숙려제로 변경 내용은 내부결재를 득함)

#### 제37조(학업중단숙려제)

- ① 학교에서는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되거나 자퇴(유예)원을 제출한 경우, 반드시 대상 학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하여 안내한다. 또한 학업중단 위기 학생이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해 사전에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상 학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 1.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 담당교사 등의 협업을 통해 학업중단 징후가 있다고 진단한 학생
  - 2. 미인정결석이 연속 7일 이상, 연간 누적 30일 이상 반복되는 학생
  - 3. 그 밖에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위기 징후 발견돼 학교장이 숙려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 4.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신청서 또는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 5. 구두로 검정고시 응시, 평생교육시설이나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로 이동 등 사유를 밝힌학생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 2. 질병·병원치료, 발육부진,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 학업을 중단 하는 학생
  -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 4. 법원에서 받은 보호처분이 진행 중인 학생
  - 5.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으로 처리된 학생
  - 6.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수시 합격 또는 수능시험일 이후
  - 7.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 ④ 학업중단 숙려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숙려 기간의 산정은 운영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숙려 기간 내 (공)휴일, 학교 출석일, 방학, 시험 기간 등은 숙려 기간에 산입한다.
  - 2. 숙려 기간은 최소 1주 이상, 최대 7주 이하로 운영한다.
  - 3. 처음: 1주(7일) ~ 최대 2주(14일)까지 부여하고 연장은 최대 7주까지 한다.
  - 4. 당해 학년도에 해당 학생에 대한 숙려제 운영 횟수는 최대 2회로 한다.
  - 5. 숙려 조기 종료 및 기간 연장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⑤ 이외에 학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지침'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공포일(2023.00.0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개정심의위

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전주영생고등학교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별표 1]

#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보관 방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 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ul> <li>· 1회차 : 주의 실시</li> <li>·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li> <li>·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li> </ul>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 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70A 5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 생에게 판매될 수 없 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3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고, 분리 물품에 대해 학부모에게 안 내하며 학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보 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 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 치

#### 〈참고〉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 2023-28 호)

- 제11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 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 ■ 전주영생고등학교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별표 2]

# <u>학생 분리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u>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b>3호</b>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 에도 불구하고 교육활 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 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장실, 교무실 등 학교의 장이 지정한 교내 별도의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 교사가 학교의 장에게 학생 인계 요청 ○ 학교의 장 책임하에 관리자가 지정 장소 로 이동 및 지도 ○ 단, 관리자 부재 시 교직원이 협력하여 학생 분리 및 지도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가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 간(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나	① 3호 '냐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 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 리및지도가필요한경우	<u>교장실, 교무실 등</u> 학교의 장이 지정한 교내 별도의 장소 (60분 이내)	학교의 장이 학부모 에게 지도 시간과 사 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ul> <li>지각은 수업 시작 후 5분으로 함</li> <li>분리 시간은 수업 종료 시까지(단, 학생이 수업 종료 전이라도 수업에 참여할 준비가 된 경우 학급으로 복귀 가능 등 상황에 맞게 수정 가능)</li> <li>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li> </ul>					
유의점	- 고의적으로 교실 밖으로 분리 조치 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 장소 선정 시 학생들의 선호 장소는 가급적 제외, 분리 공간의 환경과 안전(시설, 위험도구 등) 등을 확인 - 학칙으로 적절한 분리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실시하고 필요 이상의 지나친 분리는 자제 - 분리가 실시되는 동안 학생만 특정 공간에 방치하지 않아야 함					

■ 전주영생고등학교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별표 3]

# <u>징계 기준</u>

			징계 내용						
구분	항	행위 내 <del>용</del>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예절	1	교사 및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	0	0	0	0	0		
	2	공공 문서를 위·변조하거나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하 거나 대여한 학생		0	0	0	0		
	3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0	0	0	0		
	4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0	0	0	0	0		
준법	5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0	0	0				
	6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0	0	0		
	7	교내외에서 도박(온라인 도박 포함)을 한 학생	0	0	0				
	8	음란물 촬영 및 소지 또는 유포한 학생	0	0	0				
수업	9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0	0	0				
출결	10	미인정 지각·조퇴·결과·결석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0	0	0	0	0		
	11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0	0	0				
시험	12	시험 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훔친 학생	0	0	0	0	0		
	13	교내외에서 흡연 또는 음주한 학생	0	0	0				
약물	14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0	0	0	0	0		
	15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깨뜨 리는 일체의 행위	0	0	0	0	0		
	16	흉기를 폭행에 사용한 학생	0	0	0	0	0		
폭력	17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고의로 파손한 학생	0	0	0				
	18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스토커 행위를 한 학생	0	0	0	0	0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어	게 관한 규정에 따름						
	19	공금을 유용한 학생	0	0	0				
금품	20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한 학생	0	0	0				
	21	부당하게 금품을 각출한 학생	0	0	0	0	0		
	22	소지 및 사용 불가한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학 생	0	0	0				
	23	학습 기자재(전자칠판, 컴퓨터, 노트북 등)를 학습 목적 외로 사용한 학생	0	0					
기타	24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0	0	0	0	0		
	25	재학 중에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을 한다.	0	0	0	0	0		
	26	징계 기준 외의 사안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0	0	0	0	0		

#### 〈징계기준 10항 출결에 대한 세부 규정〉

구분	미인정출결 누적횟수	규정	지도방법
1단계	3회	인성부 생활지도 (반성문, 성찰문 쓰기 등)	학부모 내교 상담 (담임)
2단계	5ই]	인성부 생활지도 (반성문, 성찰문 쓰기 등)	학부모 내교 상담 (담임-학년부장)
3단계	7회	인성부 생활지도 (반성문, 성찰문 쓰기 등)	학부모 내교 상담 (담임-인성부장)
4단계	10회 이상	교내봉사(3~7일) 사회봉사(3일~7일)	학부모 내교 상담 (담임-교감)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회부
5단계	20회 이상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회부

- ① 미인정 지각·결과·조퇴·결석 학생은 학생의 가정 상황과 평소 학교에서의 생활 태도를 고려하여 담임교사의 상담 및 훈육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담임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고 상습적으로 미인정 지각·결과·조퇴·결석을 하는 학생은 학교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지도한다.
- ③ 적용 규정 :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된 학생은 다음의 각 단계에 따라 지도한다.
- ④ 징계를 받은 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학생은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지도할 수 있다.
- ⑤ 징계 규정의 적용은 당해 학년에 해당하며, 학년 진급 시 미인정 출결 누적횟수는 새로 적용한다. 단, 징계 규정 25항의 가중 처벌 요건에 반영한다.

#### 〈징계기준 13항 14항 흡연, 약물 대한 세부 규정〉

구분	누적횟수		규정 및 지도방법
1단계	1회	인성부 생활지도 (반성문, 성찰문 쓰기 등)	학부모 내교 상담 (담임)
2단계	2회	인성부 생활지도 (반성문, 성찰문 쓰기 등)	학부모 내교 상담 (담임-학년부장)
3단계	3회	인성부 생활지도 (반성문, 성찰문 쓰기 등) 금연프로그램 참여	학부모 내교 상담 (담임-인성부장)
4단계	4회	교내봉사(3~7일) 사회봉사(3일~7일) 금연프로그램 참여	학부모 내교 상담 (담임-교감)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회부
5단계	5회 이상	특별교육 금연프로그램 참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회부

- ① 교내외에서 흡연 또는 음주한 학생은 누적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성부 생활지도 및 징계 절차를 이행한다.
- ② 징계 규정의 적용은 재학 기간 중으로 하며, 누적횟수는 학년 진급 시에도 연계된다. 해당 학생은 세부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